

영문

[H1] Home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 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역내참가국 간 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ARFP 소개 페이지 (About the ARFP)를 참고하십시오. ARFP는 2019년 2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ARFP 소개

ARFP 소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는 역내 시장 간 접근성 강화 및 규제 조화를 통한 아시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된 다자간 프레임워크입니다.

ARFP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합니다.

- 각 참가국의 투자자가 보다 많은 투자 기회를 누리고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투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시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심화하여 역내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자본을 유인합니다.
- 아시아 축적 자본의 순환을 촉진하여 역내 투자의 원천이 되는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합니다.
- 견실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 금융시장 및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금융 안전성을 제고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판매를 위한 수준 높은 표준을 제공하는 법규 프레임워크를 유지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ARFP 펀드는 반드시 ‘패스포트 규칙(Passport Rules)’을 준수해야 합니다. 패스포트 규칙에는 투자 가능 범위, 포트폴리오 제한 및 한도, 위반사항 보고 의무, 중대사항 관련 설정국·판매국 규제당국 대상 보고 의무, 보관, 재무 보고, 패스포트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연례 이행 평가, 상황, 평가, 판매등록 취소(deregistration)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ARFP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 Passport\)](#)에 서명한 국가는 5개 국가(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 태국)입니다.

[H2] 현재ARFP를 시행 중인 국가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태국**입니다.

ARFP 합동위원회(ARFP Joint Committee) 소개

ARFP 합동위원회(JC)는 ARFP 양해각서인 MOC(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하고 ARFP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별 금융당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주로 ARFP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JC는 ARFP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s)라고도 불리는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도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는 본 웹 페이지의 ‘참고자료(Resources)’ 페이지에서, 보도자료는 ‘뉴스 & 미디어(News and Medi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 연혁

ARFP는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태국에 의해 운영되는 역내 시장 통합 구상입니다.

ARFP의 출범은 존슨 리포트(the Johnson Report)로도 익히 알려진 호주금융센터 포럼(the Australian Financial Centre Forum)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ARFP에 대한 역내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ARFP는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FMP, APEC Finance Ministers' Process)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FMP는 정책 토의나 역량 개발 워크숍과 같은 포럼에서 금융정책 입안자, 규제당국, 업계 및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참가자와 협업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ARFP 국가의 회원 간 워크숍이 다수 진행된 결과, 실무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약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었고 워크숍 참가국이 실무 그룹에 초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실무 그룹 참가 초청을 수락하였고, 이후 태국, 일본, 필리핀이 실무 그룹에 참가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에 회동한 4개국 재무장관(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은 ARFP를 위한 **의향서(SOI, 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하였습니다.

SOI에는 구체적인 패스포트 체계에 대한 공개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하겠다는 서명국 간의 합의사항이 개괄되어있고, ARFP 이행에 대한 추적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6개국 재무장관(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은 ARFP를 위한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하였습니다. SOU에는 서명국의 ARFP 참가 의지가 시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모든 APEC 국가의 참가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4개국 정부 대표(호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는 ARFP를 위한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에 서명하였고, 이후 태국도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MOC에는 ARFP의 근간이 되는 국제 공동규칙 및 협력 메커니즘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30일에 MOC가 발효되었습니다.

ARFP의 주요 연혁은 본 웹 사이트의 '주요 연혁(the Mileston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FP의 현재 참가국에 대한 정보와 ARFP 가입 신청에 대한 정보는 본 웹 사이트의 'ARFP 회원(Membership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 ARFP 주요 연혁

뉴질랜드, ARFP 시행 완료

금일 뉴질랜드는 ARFP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고 패스포트의 출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자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 접수와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 등록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패스포트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금융시장청(FMA, Financial Markets Authority)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9년 7월 26일

제6차 JC대면회의 개최(2019.5.8-9)

2019년 5월 8-9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제6차 ARFP JC 대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의장국), 한국(부의장국), 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9년 5월 9일

ARFP, 본격 시행 돌입

ARFP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일본, 태국, 호주 3개국은 자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 접수와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 등록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일본 혹은 태국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본문 읽기](#)

· 작성일: 2019년 3월 11일

제5차 JC대면회의 개최(2018.9.19-20), ARFP 시행 결정

2018년 9월 19-20일 양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자본시장청(FMA, Financial Markets Authority) 주관으로 개최된 제5차 ARFP JC 대면회의에서는 ARFP를 2019년 2월 1일에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8년 9월 20일

제4차 JC대면회의 개최(2018.4.25-26), ARFP 향후 계획

2018년 4월 25-26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주관으로 제4차 ARFP JC 대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의장국), 태국(부의장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8년 4월 26일

ARFP 파일럿 프로그램

설정국 펀드운용사(수출사), 판매국 판매사(수입사), 주요 법무·세제 자문사 등으로부터 2018년 초 시행될 ARFP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각 역할별로 혹은 여러 역할에 대한 참가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8년 1월 5일

제3차 JC대면회의 개최(2017.10.3-4), ARFP 향후 계획

2017년 10월 3-4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으로 제3차 ARFP JC 대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의장국), 태국(부의장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7년 10월 13일

연례 보고서 및 가이드스 공개

JC는 공식 웹 사이트에 제1차 연례 보고서(1st Annual Report)를 공개하였습니다. 각 참가국의 ARFP MOC에 따른 최근 이행 사항을 제공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태국의 협력 사항이 담겨있습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7년 7월 25일

제2차 JC대면회의 개최(2017.4.20-21)

2017년 4월 20-21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제2차 ARFP JC 대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ARFP MOC에 의거하여 설립된 ARFP 합동위원회(JC)의 주요 역할은 2017년 말까지 ARFP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7년 4월 27일

제1차 JC대면회의 개최(2016.11.23-24)

2016년 11월 23-24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ARFP JC 대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ARFP MOC의 Paragraph 6에 의거하여 설립된 ARFP 합동위원회(JC)의 주요 역할은 ARFP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입니다.....[본문 읽기](#)

· 작성일: 2016년 12월 6일

[H1] 공개 협의

[H2] 진행중인 공개협의(Current Consultation)

현재 진행 중인 공개협의를 없습니다.

[H2] 완료된 공개협의(Closed Consultation)

[H3] 판매국 법령 가이드نس(Guidance on Host Economy Laws and Regulations)

2017년 7월 25일 공개됨. 2017년 9월 19일 공개 협의 종료됨

‘임시 가이드نس(Interim Guidance)’는 ARFP 참가국의 시장 진입 후 ARFP 펀드 판매를 하려는 집합투자기구 운용사에게 지침이 되는 일반 규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임시 가이드نس는 ARFP 요건에 대한 초기 평가 단계에서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H4] 가이드نس 문서

- 판매국 법령 가이드نس의 커버 노트(Cover Note of Guidance on Host Economy’s Law And Regulation Relating to ARFP): [[PDF 53KB](#) | [DOCX 57KB](#)]
- 판매국 법령 가이드نس(Guidance on Host Economy’s Law And Regulation Relating to ARFP): [[PDF 354KB](#) | [DOCX 159KB](#)]
- 가이드نس 제출 보고서: [[PDF 798KB](#) | [DOCX 124KB](#)]

[H3]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공개협의서(Consultation on the Rules and Operational Arrangements)

2015년 2월 27일 공개됨. 2017년 4월 10일 공개 협의 종료됨.

본 공개협의서(Consultation Paper)는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제안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공개협의서에는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외부 의견이 취합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제2차 공개 협의서입니다. 제1차 공개 협의서 이후 실무 그룹(Working Group)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ARFP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

니다.

이는 2014년 제1차 패스포트 공개협의 이후 진행되었고, 1차 공개 협의서 관련 제출 의견 중 대외비가 아닌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4] 공개협의서 문서

- 공개협의 피드백 문서 [[PDF](#) / [Word](#)]
- 부속서 1: 판매국 법령(Annex 1: Host Economy Laws and Regulations), 부속서 2: 일반 법령 체계(Annex 2: Common Regulatory Arrangements), 부속서 3: ARFP 규칙(Annex 3: Passport Rules) [[PDF](#) / [Word](#)]
- 공식 제출 의견 (6 개 대외비 문서 제외)
 - [Aberdeen](#)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sia-Pacific Financial Forum cover letter and submission](#)
 - [Asia Pacific Real Estate Association](#)
 - [CFA Societies Australia](#)
 - [Chan & Goh LLP](#)
 - [Deutsche Bank](#)
 - [EY](#)
 - [FSC](#)
 - [ICI Global](#)
 - [IMAS](#)
 - [JP Morgan Australia](#)
 - [MSCI](#)
 - [Orbis Investment Advisory Pty Limited](#)
 - [Perpetual](#)
 - [Pitcher Partners](#)
 -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H3]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공개협의서(Consultation on the Rules and Operational Arrangements)

2014년 4월 16일 공개됨. 2014년 7월 11일 공개 협의 종료됨.

본 공개협의서(Consultation Paper)는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제안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공개협의서는 ARFP 규칙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H4] 공개협의서 문서

- 공개협의 피드백 문서 [[PDF](#) / [Word](#)]
- 공식 제출 의견
 -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 Singapore Branch](#)

- Amanah Trust Management (NZ) Ltd
- ANZ
-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
- CFA Institute
- Chan Goh LLP
- CPA Australia
- 대외비 문서 5 건
- Deutsche Bank
- Ernst & Young
- Financial Ombudsman Service
- Financial Services Council
 - Financial Services Council – Appendix A
- Franklin Templeton
- Henry Davis York
- ICI Global
- KLGates
- Managed Funds Association
- Perpetual
- Philippines Stock Exchange
- PricewaterhouseCoopers
- Property Council
- Property Funds Association
- SMSF Professionals Association of Australia
- State Street

[H1] ARFP 회원

[H2] 참가국 현황

호주 [링크]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태국

[H2] ARFP 가입

[H3] 참가국 자격 요건

ARF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반드시 ARFP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인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부속서 A(Appendix A), 즉 [IOSCO MMOU\(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에 서명을 한 서명국이어야 합니다.
-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force)의 [고위험/비협조 관할구역](#)으로 분류 및 등록된 국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 (ARFP 와 무관한 이유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 이상) 집행·협력·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IOSCO 원칙을 완전히 혹은 광범위하게 실행한 것으로 이미 평가 받아야 합니다. 혹은 JC 가 만족할 수준의 권고 사항 혹은 기타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RFP 이행 이후,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는 ARFP 규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감독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담당자를 의무 지정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가 ARFP 참가국별 규제 체계와 충분히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JC 의 의견이 만장일치되어야 합니다.

MOC에 따른 ARFP 가입 절차

ARFP 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은 MOC 의 Paragraph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격 심사를 위한 가입 신청서의 서면 제출

ARF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신의 국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설명하는 가입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정보
- (부속서 1(Annex 1), 부속서 3(Annex 3) 및 부속서 4(Annex 4) 등을 포함한) ARFP 가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MOC 수정 사항
(가입 신청 시점에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신청국은 해당 미충족 요건을 해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며, 참가국이 되는 경우 ARFP 시행 가능성 및 예상 시행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2단계: ARFP 합동위원회(JC) 회원의 자격 심사

JC 는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6개월 동안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보다 긴 기간 동안) 참가 신청국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신청국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국이 적격 국가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JC 는 해당 국가가 적격 신청국임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이후 28일 안에 (혹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보다 긴 기간 내로) 각 ARFP 참가국은 신청 국가의 가입 제안에 대한 의견(동의/비동의)을 JC 의장국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JC 의장국은 ARFP 참가국 의견이 접수된 지 28일 안에, ‘신청국이 참가국으로 가입 승인 되었음’을 신청 국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ARFP 가입은 JC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ARFP 가입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국은 JC 의장국으로부터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가입 승인서를 수령 받는 시점부터 (혹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다른 시점부터) 참가국으로 인정 됩니다. (ARFP 참가국의 전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ARFP 참가국 전원이 정해진 시한 내로 가입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반면 ARFP 가입이 반려되었다면, JC 의장국은 신청국에게 ARFP 가입이 반려되었음을 알리고 미충족 요건 등 반려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국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국이 부적격 국가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JC 는 해당 국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추후 가입 신청시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JC 의장국의 가이드스가 공지된 이후 28일 안에 각 ARFP 참가국은 해당 가이드스에 대한 의견(동의/비동의)을 JC 의장국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JC 의장국은 ARFP 참가국 의견이 접수된 지 28일 안에 심사 결과를 신청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H3] ARFP 참가국 의무사항

ARFP 참가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MOC 에 의거하여 ARFP 를 시행한다.
- ARFP 의 목표에 따라 패스포트 제도를 운영하고 패스포트 펀드를 감독한다.
- 의견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한다.
- 타 참가국과 협력한다.
- JC 를 지지하고 필요시 지원을 제공한다.
- 참가국 자격요건을 유지한다.

[H1] 호주

호주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rfp@asic.gov.au)로 문의하십시오.

[H2] 호주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호주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펀드는 이미 '공모펀드(Registered Scheme)'이어야 합니다. 다만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공모펀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SIC의 심사의견이 필요합니다.

호주 패스포트 운용사는 ARFP MOC의 정의에 부합하는 적격 운용사입니다.

호주 패스포트 펀드는 호주 패스포트 규칙(Australian Passport Rules), ASIC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뿐만 아니라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의거하여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희망하는 호주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등록 신청서 작성 후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H2] 판매등록이 완료(Notified)된 외국 패스포트 펀드를 호주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절차

[H3] 호주 현지 규정에 대한 개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호주의 현지 규정을 적용 받고, 해당 규정은 외국 법인과 호주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주의 현지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 호주 패스포트 규칙(Australian Passport Rules)
- ASIC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2001)
- 호주 회사 규정(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 ASIC 규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Regulations 2001)
- ASIC 감독비용회수규정(ASIC Supervisory Cost Recovery Levy Regulations 2017)
- 호주 회사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

이외에도 (세제,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테러, 외국인 인수 및 취득 등) 호주 현지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ARFP의 경우, 판매 등록이 완료(notified)된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수익증권을 호주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려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호주 회사법 및 호주 회사 규정의 일부 요건으로부터 적용 면제를 받습니다.

ASIC은 호주 회사법 및 기타 관련법의 집행 및 관리를 통해 등록 기업, 금융시장 및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호주 정부의 독립 기관입니다.

[H3] 호주의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 요건

외국 패스포트 펀드를 호주에서 판매 등록(Notification)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요구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운용사는 ASIC에 외국 회사로 등록(Registered Foreign Company)이 되어야 하고, 운용사의 펀드는 설정국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된 방식에 따라 현재 투자권유 및 판매 중인 펀드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로 등록이 완료된 운용사는 호주에서의 펀드 판매를 위한 ‘판매등록신청서(Notice of Intention)’를 작성하고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외국 운용사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이름이 호주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H3] ARFP 펀드의 판매

판매등록이 완료(Notified)된 외국 ARFP 펀드를 호주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운용사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1. 호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
2. ‘호주 금융서비스 인가(AFSL)’를 취득한 판매사 혹은 해당 판매사의 지정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통한 판매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가 호주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운용사는 AFSL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AFSL 인가 기관으로서의 일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가 AFSL을 취득한 판매사나 해당 판매사의 지정 대리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운용사는 AFSL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판매사가 보유한 AFSL의 범위에 펀드의 투자권유 및 판매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Not Notified),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해당 펀드를 호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H3] 판매등록 이후 준수사항(Ongoing Requirements)

판매등록이 완료된 이후, 외국 패스포트 펀드와 해당 펀드의 운용사는 호주 패스포트 규칙(Australian Passport Rules)을 비롯한 기타 호주 현지법에 따라 다음의 법규에 포함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등록된 외국 회사(Registered Foreign Company)’로서의 의무 사항
- AFSL 취득에 따른 의무 혹은 AFSL 의무 적용의 면제
- 상품 설명서(PDS)·거래 확인·주문취소(Cooling Off) 관련 규정

- 금지된 보수 행위 및 광고 관련 규정
- 투자자 명부 관리
- 투자자를 위한 수시 공시, 정기 공시, 재무 보고 및 감사 보고 관련 의무사항
- (수익자 투자 명세, 문서, 자료 등) 투자자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 연간 서류 제출, 중대 변동사항 보고 및 수익자 명부 제공 의무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ASIC에 보고할 의무
- 호주 투자자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내/외부 분쟁해결 체계 관련 의무사항
- ASIC의 감독비용 관련 연간 분담금(Annual Levy) 지불 의무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호주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https://asic.gov.au/for-finance-professionals/fund-operators/establishing-and-registering-a-fund/how-to-register-as-an-australian-passport-fund/>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호주 판매등록 절차: <https://asic.gov.au/for-finance-professionals/fund-operators/establishing-and-registering-a-fund/how-to-become-a-notified-foreign-passport-fund/>

호주 회사법: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A00818>

호주 회사 규정: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F2001B00274>

호주 패스포트 규칙: ARFP 관련 패스포트 규칙은 호주 현지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규정 관련 지표: <https://asic.gov.au/regulatory-resources/>

금융서비스 자료: 금융서비스 인가 가이드نس (<https://asic.gov.au/for-finance-professionals/afs-licensees/>)

AFSL 취득 기관, 지정대리인(AR), 공시문서 등 기록부를 확인 할 수 있는 ASIC Connect: <https://asic.gov.au/online-services/search-asics-registers/>

[H1] 일본

일본의 ARFP 주무기관은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명: 사토시 이즈미하라
- 전화번호: +81 3 3506 6626
- 이메일: Satoshi.izumihara@fsa.go.jp

ARFP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나 일본에 ARFP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한 [규제 관련 문서 및 가이드](#)는 [FS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1] 한국

한국의 ARFP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금융위원회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s Soyoung Roh

Deputy Director, Asset Management Divis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h: +822 2100 2662

Email: lemonkuki@korea.kr

Ms Yeohee Shim

Senior Manager, Asset Management Supervision Departmen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h: +822 3145 6724

Email: yshim1109@fss.or.kr

Mr Hojin Choi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h: +822 3145 6714

Email: chjin@fss.or.kr

[H1] 뉴질랜드

[H2] 뉴질랜드 현지 규정의 개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ARFP 제도는 시행 중이고, 패스포트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현지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뉴질랜드 자본시장법(FMC Act) Part 9 Subpart 6
 - * 원문: Subpart 6 of Part 9 of The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FMC Act)
- 패스포트 펀드 관련 2019년 자본시장규정(FMC Regulation 2019)
 - * 원문: The Financial Markets Conduct (Asia Region Funds Passport) Regulations 2019 (Passport Fund Regulations)
- 2019년 자본시장 수정 규정(FMC Amendment Regulations 2019)에 따른 2014년 자본시장 수정 규정((FMC Amendment Regulations 2014)
 - * 원문: Amendments to Financial Markets Conduct Regulations 2014 made by the Financial Markets Conduct (Asia Region Funds Passport) Amendment Regulations 2019)

[H2] 뉴질랜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절차

뉴질랜드의 공모펀드를 다른 ARFP 참가국에 판매하려는 경우, 뉴질랜드 자본시장법(FMC Act) Section 134(3)에 따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용사는 패스포트 펀드등록 신청서(FMA 홈페이지 참고)를 작성한 뒤 FMA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FMA는 뉴질랜드 자본시장규정(FMC Regulations) Regulation 82B에 의거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에는 해당 운용사가 ARFP MOC 부속서 2(Annex 2)의 Section3(4)에 정의된 ‘적격 기관’인지에 대한 평가와 해당 펀드가 MOC 부속서 3(Annex 3)의 패스포트 규정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지 그리고 앞으로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H2] 판매등록이 완료(Notified)된 외국 패스포트 펀드를 뉴질랜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절차

뉴질랜드 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는 뉴질랜드 자본시장법(FMC Act)과 자본시장규정(FMC Regulations)은 공시, 거버넌스, 리포팅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 규정은 뉴질랜드에 판매되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에도 적용되고, 규정 적용에 있어 일부 수정 및 면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 펀드 규정(Passport Fund Regulations)에 따라, ‘적법한 투자권유(Recognized Offer)’는 뉴질랜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일부 면제받고, 대신에 수정된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패스포트 펀드 규정에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Entry)과 판매등록 이후 컴플라이언스 요건(Ongoing Compliance Requirements)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판매되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공시 및 리포팅에 수정 적용되는 요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적법한 투자권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가 패스포트 펀드 규정의 Regulation 12~16에 명시된 선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선결조건은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 신청 프로세스와 FMA 승인 이후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포트 펀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적법한 투자권유의 경우, 뉴질랜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규정의 다양한 요건으로부터 적용 면제를 받게 됩니다. 적용 면제가 되는 요건에는 뉴질랜드 자본시장법 Part 4의 거버넌스 의무 조항(Governance Obligations in Part 4 of the FMC Act)과 Part 7의 재무보고 의무 조항(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under Part 7 of the FMC Act) 등이 있습니다. Part 7의 경우,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가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원래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H3]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에 대한 FMA의 승인 절차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시장 진입 신청을 위해 운용사는 패스포트 펀드 판매등록 신청서(FM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한 뒤 FMA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뉴질랜드 시장진입에 대한 FMA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뉴질랜드에서의 판매등록 절차(Notification Process)가 MOC 부속서 2(Annex 2)의 Section 6에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진입 신청서는 MOC 부속서 2(Annex 2)의 Section 4(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Section4(2)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 패스포트 펀드의 고유등록번호
- 패스포트 펀드 설정국 등록 신청서의 Part A 부분
- 패스포트 펀드 규정의 Regulation 12(2)에 명시된 문서 및 정보 (해당 문서 및 정보는 신청서 제출시 한번에 제공해야 함).

판매 등록 신청에 앞서, 다음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금융서비스 제공업자 등록부(FSP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er)'에 등록할 것
2. 2008년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법(FSP Act)의 '등록 및 분쟁해결(Registration & Dispute Resolution)'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분쟁해결체계에 가입할 것
3. 설정국의 법규를 준수할 것
4. 뉴질랜드에 현지 대리인(Local Agent)을 선임할 것

ARFP MOC 부속서 2(Annex 2)의 Section 6에 명시된 대로 뉴질랜드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일 이후 15영업일의 심사 기간 동안 FMA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거나 '신청서의 필수 내용이 미비하다'는 통보를 듣지 않는 한,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 FMA와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심사기간은 최대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H3] 외국 패스포트 펀드 판매를 위한 선결 요건**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적법한 투자권유(Recognized Offer)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패스포트 펀드 규정에 정의된 선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ARFP MOC의 Paragraph 8.6 혹은 8.8에 의거 뉴질랜드로부터 '해당 외국 패스포트 펀드가 포함된 외국 패스포트 펀드 클래스의 시장진입 및 판매등록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금융서비스 제공업자 등기소(Registrar of Financial Service Providers)에 '선택형 판매등록 신청서(Opt-in Noti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을 준수해야 하고, 상품설명서(PDS)-FSPR 등록 정보-외국 패스포트 정관 문서-설정국이 부여한 관련 규정적용 면제사항-(가능한 경우) 최신 재무보고서 등 필요한 첨부 문서 및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적법한 판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자본시장법(FMC Act)의 Part 3에 따른 공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펀드 판매와 관련된 일부 정보는 (금융서비스 제공업자 등기소에 제출되는) PDS를 통해 공시되어야 하고, 공시 등록부(Disclose Register)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시 내역은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항상 정보의 최신성·정확성·명료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규정의 [Schedule 4](#)에는 PDS와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있고, [Schedule 4](#)의 [Part 6](#)에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투자권유 및 판매 인정을 위해 수정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되어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해, ARFP에 대한 개괄뿐만 아니라 ARFP를 통한 펀드 판매와 뉴질랜드 현지법에 따른 펀드 판매 간의 차이를 설명한 문서도 PDS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양식은 뉴질랜드 자본시장규정의 [Schedule 26](#)을 참고하십시오.

[H3] 외국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이후 준수사항

판매등록 이후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패스포트 펀드 규정, 뉴질랜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규정에 정의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패스포트 펀드 규정은 펀드 패스포트 펀드의 '적법한 투자권유(Recognized Offer)'를 위해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무보고서 제출의 의무
- 설정국 법률 및 패스포트 규칙 준수의 의무
- 주요 변화사항 발생시 FMA에 대한 보고의 의무
- 운용사가 뉴질랜드 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FMA에 대한 통지의 의무
- 패스포트 이행 평가 보고서(Implementation Review Report)의 사본을 FMA에 제공할 의무
- 운용사의 FSPR 등록 의무 및 뉴질랜드 현지 대리인(Local Agent)을 선임하고 현지 주소를 확보할 의무

또한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판매등록 이후 뉴질랜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 공시 요건(Ongoing Disclosure Requirements)을 포함합니다. 지속 공시와 관련된 특정 요건은 뉴질랜드 자본시장규정의 [Schedule 4](#)에 명시되어있습니다([Schedule 4](#)의 [Part 6](#) 수정 조항 참고).

이외에도 (세제, 개인정보보호 등) 뉴질랜드 현지법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H2]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MA의 공식 홈페이지](#)
- 뉴질랜드의 회사 법인등기소인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의 [공식 홈페이지](#)
-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를 위한 [가이드](#)
- [뉴질랜드 자본시장법\(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
- [뉴질랜드 자본시장규정\(Financial Markets Conduct \(Asia Region Funds Passport\) Regulations 2019\)](#)
- [ARFP 관련 뉴질랜드 자본시장 수정 규정\(Financial Markets Conduct \(Asia Region Funds Passport\) Amendment Regulations 2019 amending the Financial Markets Conduct Regulations 2014\)](#)
- [금융 서비스 기관법\(Financial Service Providers \(Regis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Act 2008\)](#)

추가 문의 사항은 [FMA\(questions@fma.govt.nz\)](mailto:questions@fma.govt.nz)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1] 태국

태국의 ARFP 주무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EC(arfp@sec.or.t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ARFP 펀드를 판매하려는 외국 패스포트 운용사는 사전에 펀드 판매 신청서를 보조 문서와 함께 첨부하여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ARFP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국 회사나 태국에 ARFP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한 규제 관련 문서 및 가이드는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 ARFP 펀드 판매등록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

ARFP 펀드의 판매 등록을 희망하는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판매등록 신청서인 'Form 35 – ARFP CIS'를 작성하고, 'Form 35 – ARFP CIS'에 명시된 보조 제출 문서와 함께 신청서 원본을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Form 69 – CIS Full'는 'Form 35 – ARFP CIS'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외국 패스포트 운용사는 판매등록을 위해 Form 35뿐만 아니라 'Form 69 – CIS Full'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등록 신청과 관련된 모든 양식은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2] ARFP 펀드의 판매

ARFP 펀드를 태국에 판매하기 위해, 외국 패스포트 펀드 운용사는 SEC의 인가를 받은 현지 중개기관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 ARFP 펀드를 위한 현지 중개기관으로서 SEC의 인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금융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Type A: 증권사 등
- Type C*: 자산운용사 등
- Type D: 제한적 중개, 매매 및 인수(LBDU)

* Type C 인가를 받은 중개기관은 적합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고 SEC 승인을 통해 적격 판매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중개기관의 인가 취득현황은 다음 링크를 통해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ype A](#), [Type C](#), [Type D](#))

[H2] 펀드등록 이후 ARFP 펀드 운용사의 준수 사항

태국에서 ARFP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운용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 ARFP 펀드 운용사는 기존 판매등록 신청서('Form 69 – CIS Full' 혹은 'Form 69 – CIS')가 제출된 날로부터 1년 안에, 'Form 69 – CIS Annually Update'를 작성한 뒤 SEC에 원본을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판매등록 이후 중대한 변화사항이 발생하였고 변화사항이 이미 설정국 규제당국에 통지된 경우, 외국 ARFP 펀드 운용사는 변화사항에 대한 설정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단 설정국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0일 내로 'Form 69 – CIS Material Update'를 작성한 뒤 SEC에 원본을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국 ARFP 펀드 운용사는 태국에 판매되고 있는 ARFP 펀드 관련 판매실적 보고서(Sales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펀드 투자 권유가 일어난 마지막 공식 일자로부터 45일 안에 SE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식은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1] 규제 관련 참고 자료

본 페이지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ARFP 규제 관련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정 국가별 ARFP 규제 자료 및 가이드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태국의 링크(Links to be inserted)를 참고 하십시오.

[H2] 현행 규제 관련 참고 자료

- ARFP MOC (서명본) [PDF 6.7MB]
- ARFP 판매국 법령 가이드스 [PDF 1.13 MB]

[H2] 과거 규제 관련 참고 자료

- ARFP 의향서(SOI) (서명본) [PDF 3.0MB]
- 프레임워크 문서 [DOCX 135KB]
- 2015 ARFP 규칙 및 운영체제 초안 [PDF 792KB]
- ARFP 양해서(SOU) (서명본) [PDF 1.5MB]
- 세제 레퍼런스 그룹 협약사항 [DOCX 33KB]
- 2016-2017 ARFP 연례보고서 [PDF 687KB | DOCX 1.9MB]
- 2017-2018 ARFP 이행 보고서 [PDF 1.022MB]

[H1] 뉴스 & 미디어

- 2019 년 7 월 26 일: 뉴질랜드, ARFP 시행 완료
- 2019 년 5 월 9 일: 제 6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9.5.8-9)
- 2019 년 3 월 11 일: ARFP, 본격 시행 돌입
- 2018 년 9 월 20 일: 제 5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8.9.19-20), ARFP 시행 결정
- 2018 년 4 월 26 일: 제 4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8.4.25-26), ARFP 향후 계획
- 2018 년 1 월 5 일: ARFP 파일럿 프로그램
- 2017 년 10 월 13 일: 제 3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7.10.3-4), ARFP 향후 계획
- 2017 년 7 월 25 일: 연례 보고서 및 가이드스 공개
- 2017 년 4 월 27 일: 제 2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7.4.20-21)
- 2016 년 12 월 6 일: 제 1 차 JC 대면회의 개최(2016.11.23-24)
- 2016 년 6 월 30 일: ARFP MOC 발효
- 2016 년 6 월 30 일: 태국, ARFP MOC 체결 발표
- 2016 년 4 월 28 일: 호주, ARFP MOC 체결 발표
- 2016 년 4 월 28 일: 일본, ARFP MOC 체결 발표

- 2016년 4월 28일: 뉴질랜드, ARFP MOC 체결 발표
- 2016년 1월 18일: ARFP 사무국, ARFP 도입을 위한 수문을 열다
- 2016년 9월 11일: 호주, ARFP 양해서(SOU) 체결 발표
- 2015년 2월 27일: 싱가포르, 2차 공개 협의 발표
- 2015년 2월 27일: 호주, 2차 공개 협의 발표